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합46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이행청구]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나5232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합46825 판결

전 문

원 고 A

可 고 1. B

2. C

3. D

변론 종결 2015. 4. 9.

판결 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15 지분에 관하여 2009.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피고 B은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12. 4. 접수 제81584호로 마친 지분 4/27 소유권이전등기 중 11/135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 12. 4. 접수 제81584호로 마친 지분4/27 소유권이전등기 중 11/135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1/15 지분에 관하여 2009.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02. 8. 16. E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4촌 사이로서,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선조의 상속재산 문제에 관하여 상당 기간 다투어 왔다.

다. 피고 D은 2009. 12. 4.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에게 4/27 지분, 피고 C에게 4/27 지분, F에게 1/27 지분을 각 2009.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자신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전부 이전해 주었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약정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D이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소유인 1/3 지분을 원고, 피고 B, 피고 C, F, G에게 각 1/15 지분씩 증여하고, 현금 8,000만 원을 출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5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에 우선 총당하고, 나머지는 위 5인에게 동일하게 분배하여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그런데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과 달리 피고 B, C에게 각 4/27 지분, F에게 1/2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 C는 이 사건 약정보다 각 11/135 지분(=4/27 지분 - 1/15 지분)만큼 더 많은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므로 위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D을 대위하여 피고 B,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각 11/1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다.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원고, 피고 B, F, G과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1,600만 원(=8,000만 원 ÷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15 지분에 관하여 2009.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들은 상속과 관련된 재산 문제로 오랜 기간 다투어 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약정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뿐만 아니라 G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F도 이 사건 약정보다 적은 지분만을 이전받았음에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 D은 2009. 11. 10. 피고 C와 부산 금정구 H 소재 상호 미상 헛집에서, 그리고 20011.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J호텔에서 '원고는 술밭을 가져갔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 D 본인신문결과는 믿기어렵고,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D은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재판상 자백을 하였으나 자백하지 아니한 피고 B, C에 대하여는 그 자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09. 4.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는 부적법하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약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라는 사유만으로 피고 B, C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반복되지도 않는다).

3)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판단

피고 D이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5 지분에 관하여 2009.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모, 판사 전범식, 판사 민수연

부동산의 표시

울산광역시 북구 K 임야 63,577㎡. 끝.